

행정처분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(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(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2조제1항제1호·제3호·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, 가축분뇨관련영업,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그 밖에 시설설치자,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자

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배출시설설치·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		
2)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2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		
3)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3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		
4)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4호	사용중지 명령	폐쇄명령		
5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5호	경고	사용중지명령 1개월	사용중지명령 2개월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
6)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6호				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		사용중지 명령	폐쇄명령		
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1개월 사용중지 명령	사용중 지명령	폐쇄명 령	
7)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7 호	1개월	2개월		
가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		경고	사용중 지명령	사용중 지명령	허가취소
나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경고	1개월 경고	2개월 사용중 지명령	사용중지 명령
다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경고	경고	1개월 사용중 지명령	2개월 사용중지 명령
8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·변경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8 호			1개월 2개월	2개월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경고	사용중 지명령	사용중 지명령	허가취소 또는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경고	1개월 개선명 령	2개월 사용중 지명령	폐쇄명령 사용중지 명령
9)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9 호			1개월 2개월	2개월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		경고	사용중	사용중	사용중지

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	지명령	지명령	명령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		경고	1개월 경고	2개월 사용중	3개월 사용중지
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		지명령	명령
10)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	법 제18조			1개월	2개월
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제1항제10				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	호	경고	허가취		
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	소		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		경고	경고	사용중	사용중지
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		지명령	명령
11)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	법 제18조	경고	사용중	1개월 사용중	2개월 사용중지
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11		지명령	지명령	명령
	호		1개월	2개월	3개월
12)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	법 제18조	허가취소	허가취		
인·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	제1항제12	또는	소 또는		
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	호	폐쇄명령	폐쇄명		
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			령		
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					
치·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					
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					
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					
정되는 경우					
13)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	법 제18조	허가취소			
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	제1항제13	또는			
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	호	폐쇄명령			
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	

나.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1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 명령 3개월	폐쇄명령
2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2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 명령 3개월	폐쇄명령
3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3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 명령 3개월	폐쇄명령
4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4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 명령 3개월	폐쇄명령

다.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3호	허가취소			
4)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4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5)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·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·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5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6)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갈	법 제32조	영업정지	허가취소		

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제1항제6호	6개월	소			
7)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·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7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	6개월
8)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8호		지	지		1개월 3개월
가) 수집·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		영업정지	허가취소			6개월
나) 그 밖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	6개월
9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9호	영업정지	1개월 허가취소	3개월		
10)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0호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	허가취소	
11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1호		지	지		3개월 6개월
가)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허가취소	
나)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		경고	1개월 영업정지	3개월 영업정지	허가취소	
다)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경고	1개월 영업정지	3개월 영업정지	허가취소	
			지	지		

라)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경고	1개월 영업정지	3개월 영업정지	허가취소
마)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영업정지	1개월 영업정지	3개월 영업정지	허가취소
12)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2호	영업정지	3개월 허가취소	6개월	
13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3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 6개월
14)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·처리 및 시설관리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4호	경고	1개월 영업정지	3개월 영업정지	영업정지 6개월
15)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5호 본문	허가취소			
16)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,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6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 6개월
17)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·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	법 제32조 제1항제17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
			지	지	
			1개월	3개월	

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					
18)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8 호	경고	영업정 지	영업정 지	영업정지 6개월
가) 장부를 기록·보존하지 않은 경우			1개월 영업정 지	3개월 영업정 지	허가취소
나)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 우		1개월	지	지	
19)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 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9 호		3개월	6개월	
가)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 나 거짓으로 한 경우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 지	영업정 지 6개 월	허가취소
나)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	경고	3개월 영업정 지	영업정 지	영업정지 6개월

라.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2)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 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2호	등록취소			
3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4호				
가)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		경고	영업정	영업정	등록취소

달하게 된 경우			지	지	
나)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		경고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등록취소
다)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경고	지	지	
4)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5호	경고	1개월 등록취	3개월	
5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6호		소		
가)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		영업정지	영업정	영업정	등록취소
나)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		1개월	지	지	
다)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		영업정지	3개월 영업정	6개월 등록취	
라)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	3개월	지	소	
6) 법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	법 제35조	경고	6개월 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			지	지	6개월
		영업정지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등록취소
		1개월	지	지	
		영업정지	3개월 등록취	6개월	

<p>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</p>	제1항제7호	6개월	소			
<p>7)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 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</p>	법 제35조 제1항제8호	등록취소				
<p>8)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 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</p>	법 제35조 제1항제3호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 소			
<p>9) 위 8) 외에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</p>	법 제35조 제1항제3호	경고	영업정 지 1개월	영업정 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<p>10)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</p>	법 제35조 제1항제9호					
<p>가)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</p>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 지 3개월	영업정 지 6개 월	허가취소	
<p>나)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</p>		경고	영업정 지 1개월	영업정 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